

복리후생규정

[규정 제8호
제정 2017.01.19.
인사노무부]

제1장.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 임원 및 직원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사기양양과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2장. 안전과 보건

제3조(안전 및 건강관리) ①공사는 직원의 건강상태와 근무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에 위태롭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고 생명보호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②직원의 안전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정기건강진단) ①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②제1항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사가 부담한다.

제5조(의료시설) 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속 의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의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가입) 공사는 직원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직원의 건강과 보건에 관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3 장. 체육

제7조(체육활동 지원) ①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, 상호 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서 장소, 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.

제4장. 후생

제8조(후생비 지급) ①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급식보조비
2. 교통 및 자가운전지원비
3. 직책수행비
4. 파견업무수행비
5. 자녀학비보조금
6. 재해보상
7. 선택적 복지비
8. 하계휴가비
9. 상조회 지원금
10.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

②제1항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자녀학비보조금) 공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.

1. 지급대상 : 고등학교 취학자녀
2. 지급한도액 : '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'에서 정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
3. 등록금의 범위는 시행내규로 정한다.

제10조(복지시설의 운영) ①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직장새마을금고와 구내휴게소, 구내식당, 구내이발소, 기

타 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한 복지시설 운영 및 사원 간 상부상조를 위하여 사원을 회원으로 하는 상조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③상조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따로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11조(피복지급) ①공사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지급 또는 비치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피복사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동복(제모 및 특수복을 포함한다)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손실, 훼손, 오염, 또는 디자인, 색상, 재질등의 변경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지급을 할 수 있다.

③피복의 수선 및 세탁등 필요한 비용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비치 사용하는 피복의 경우에는 공사가 부담한다.

제5장 재해보상

제12조(재해보상) ①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 및 사망한 경우, 또는 재산상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행한다.

1. 휴업보상 : 요양 기간 중 보수규정에 의한 급여 해당액
2. 유족위로금 : 2,000만원
3. 재산상 손실 : 실비 보상

②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제2항의 관계법령에서 보상되지 아니하는 항목 등에 대한 재해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3조(재해부조) 수재·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부조를 행할 수 있다.

제6장 보칙

제14조(지급의 특례) ①이 규정에 의한 제반 복지후생 실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.

②공무원 신분으로 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복지후생은 공무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제15조(위임규정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단, 공포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<별표 1> (제13조 관련)

재해부조금지급표

구	분	지 급 액
1.	주택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유실된 경우	기본급의 300%
2.	주택건물의 2분의 1 이상의 소실,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	기본급의 200%
3.	주택건물의 3분의 1 이상 소실,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	기본급의 100%